

참고자료 1. '99 사업실적 및 '2000 사업계획(안)

I. 1999년도 사업실적

I) 총괄

주요사업	계획	실적
1. 제도조사연구 및 건의 ○ 전기사업법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 자원절약과 재활용법 관련사항 ○ 열병합발전시설 및 운용실태조사	수시	8건 (2건) (3건) (2건) (1건)
2. 열병합발전기술교육 및 세미나 실시 ○ 기술 교육 ○ 기술 세미나	1회 1회	1회 1회
3. 기술정보 보급 및 교류 ○ 국내외 관련기술 ○ 정보교류·국제협력	수시 계속	20건 계속
4. 간행물 발간 ○ 협회지(계간지) 발간 ○ 기타	4회 수시	4회 5건
5. 홍보 및 협조 ○ 사업안내서 등 제작배포 ○ 홍보자료제공·계재 ○ 회원가입권유 ○ 회원사 협조	수시 " 계속 계속	3회 7회 계속 계속
6. 행정관리 ○ 정기총회 ○ 이사회 ○ 정관 및 규정개정 등	1회 2회 1회	1회 3회 2회

II) 주요사업 세부 추진실적

1. 제도조사연구 및 건의

가. 전기사업법 관련사항

- 발전기 터빈 등 검사주기완화 추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2년 → 4년
 -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1년 → 2년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에 누차 건의 및 방문추진하여 추진중인 사항을 회원사에 통지하였으며
 - 지난 99. 12. 2 차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치완료됨.

나. 대기배출보전법 관련사항

- 대기배출규제완화 추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03년 시행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개정계획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집·종합하여 환경부 간담회에 참석(99. 8. 26)하고 의견제출
 - 자체적으로 회원사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실태와 대응방안을 조사 협의 및 종합,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원사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99. 10. 27 오전)한 후 당일오후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를 단체로 방문하여 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완화

- 요청하였으며 동 내용 및 결과를 전 회원사에 통지
- 환경부로부터 산업자원부에 협의요청된 환경부 최종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 조사·종합하여 99. 12. 13 산업자원부에 제출하고 동 내용을 전 회원사에 통지
-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중임.

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사항

- 산업자원부 및 환경부의 위탁업무인 열병합발전소의 석탄재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조사·종합하여 양부에 제출
- 정부의 「자원환경관리협약」제도와 "제2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발췌하여 해당 회원사가 연료사용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회원사에 통지

라. 전국열병합발전시설 및 운용실태조사

- 전국 82개 업체의 1998년말 현재의 시설용량, 제작사, 설치년도, 발전량, 판매전력량, 연료 및 동력 사용량 등에 관하여
-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협조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 조사·종합하여 회원사 및 관련업체가 상호 정보교류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협회지(제13호)에 수록 배포

2. 열병합발전 기술교육 및 세미나 실시

가. 기술교육 실시

- 기간 : 99. 9. 2 (목) ~ 3 (금) (2일간)
- 장소 : 서울에너지(주) 강당(서울 양천구소재)
(구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
- 참가 인원 : 26개사 91명(회원사 16개사 76명, 비회원사 10개사 15명)

○ 주제 및 강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김 광 식 사무관)
- 발전기 수명진단
(한전기공(주) 전문기술지원실 김 상 식 과장)
- 터빈축 정렬 및 베어링 정비
(한전기공(주) 전문기술지원실 김 성 봉 과장)
- 보호계전기 설계 및 운용
((주)화인이엔씨 기술사 이 경 식 대표이사)
- 발전설비 손상분석 및 정비대책
(한전기공(주) 기획협력팀 김 승 태 팀장)
- 열병합발전 수처리기술
(한전 전력연구원 발전연구실 박사 박 광 규 부장)
- 발전기 자동전압조정장치(AVR) 및 자동동기장치점검 기술
(한전기공(주) 정비기술개발팀 천 영 식 과장)

나. 기술세미나 실시

- 기간 : 99. 11. 11 (목) ~ 12 (금) (2일간)
-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강당

- 참가 인원: 20개사 59명(회원사 13개사 49명, 비회원사 7개사 10명)
- 주제 및 발표자
 - 에너지산업구조 개편과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전망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전략팀 박사 박 용 순 팀장)
 - 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연구개발과 국산개발 적용사례 (한전전력연구원 발전연구실 책임연구원 임 익 현 부장)
 - 수원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시설 견학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 전 인 배)
 - 톨딩패드 베어링의 설계 개념 (한전기공(주) 수화력처 전문기술지원실 김 성 봉 과장)
 -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규제정책 (환경부 에너지관리과 윤 명 현 사무관)
 - 2003년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전망과 대응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열병합발전소 화학팀 전 옥 상 과장)

다. 종합 평가

열병합발전 기술교육, 세미나는 매년 각 1회씩 실시하여 실무에 도움을 줄뿐더러 상호 정보·기술교류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분야별로 세분하여 보다 더 횡수를 늘려서 실시하고 가급적 비수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기술 정보 수집·보급 및 교류

가.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정보 보급

나. 기술·정보교류 및 국제 협력

- 기술 및 정보 교류
 - 전국 열병합발전시설 및 운영실태조사 자료 배포
 - 열병합발전 정비·보수·시공업체 정보조사 발간 배포
 - 한국전력연구원 기술세미나 참가
 - 터빈제어시스템 기술세미나(99. 8. 27) 참가
 - 「발전기술한마당」행사(99. 10. 15)를 후원하고 이를 전 회원사에 알려져 많은 관계자 참가
 - 열병합발전 기술교육 및 세미나 수요 조사
 - 열병합발전 관계자 기술교류회의 개최(99. 2. 5)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이용안내
 - 소형 열병합발전기술연구회 참가
 - Y2K 문제해결우수사례 전파
 - 환경규제완화 추진 간담회 개최
 - 일시 : 99. 10. 27 11:00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호프호텔 "서라벌"
 - 참가 인원 : 회원업체 간부 10명
- 국제 협력
 - 국제관련 협력·자료 수집
 - 일본 열병합발전센터(CGCI)
 - 정기간행물 및 기술간행물
 - 유럽 열병합발전협회(Cogen-Europe)
 - 국제 열병합발전연맹(International Allange)
 - 캐나다 L&K International 등

4. 간행을 발간

가. 협회지 "열병합발전" 발간

- 발간 회수 : 연 4회(계간지, 분기 1회)

나. 기타 간행물

- 열병합발전 기술교육 강의록(300p)
 - " " 기술세미나 발표록(140p)
- 일본 열병합발전 사례집(100건) 제작·운영(990p)
- 열병합발전 설비·정비·보수시공업체 정보(60p)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57p)

5. 홍보 및 협조

가. 사업안내서 및 협회 정관·규제 등 배포

- 사업안내서 제작·배포
- 협회 정관·규정집 제작 배포
- 협회 규정 개정사항 안내 및 협회 행사 등 홍보

나. 홍보자료 제공 및 게재

- 에너지 및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관리지 등
- 정기총회, 임원선임, 기술교육 및 세미나 실시 등

다. 회원가입 권유

- 경남 진주소재 신동에너지(주) 등 10여개사에 수차에 걸쳐 공문, 면담, 전화 등으로 회원가입안내하고 독려하였으며 신동에너지(주)가 가입확정되었음.

라. 회원사 협조 및 회비 납부 독려

- 관련업무 협조요청사항 수시처리 : 월평균 약 10여 업체
- 회비납부 누차 촉구

※ '99 에너지 절약유공 포상

- 회원사 중 수상자 현황(수상을 축하합니다)
 - 철탐산업훈장 : 에너지관리공단 홍운호 부이사장
 - 산업포장 : 제일제당(주) 김포공장 서극수 공장장
 - 대통령포창 : 포항중합제철(주) 임군택 부장
 - " " : 에너지관리공단 손학식 처장
 - 국무총리표창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승규 처장
에너지관리공단 임대준 부처장
이건산업(주) 박우찬 팀장
 -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 15명

6. 행정관리

가.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99. 3. 26)

- 제4대 김태곤 회장 취임
- 임원선임, 정관 및 규정개정등

나. 회장선임·추대 이사회 개최(99. 8. 6)

- 제5대 김영철 회장 취임

다. 임원간담회 및 이사회 개최(99. 12. 10)

- 협회 운영·발전방안 협의
- 협회사무실 이전 및 협회규정 일부개정 의결

라. 협회사무실 이전(99. 12. 28)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52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리동)

마. 임원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 등기

- 법정등기, 주무부처보고 및 회원사 통지 등

II. 2000년도 사업계획(안)

주요사업	세 부 사 업	횟수	사 업 기 간				주요사업	세 부 사 업	횟수	사 업 기 간			
			1/4	2/4	3/4	4/4				1/4	2/4	3/4	4/4
1. 제도조사 및 개선건의	○관련자료·정책 등 조사 및 수집 - 전기사업법, 환경관련법 및 전기·열 요금 관련 사항 등 ○분야별 검토·자문 및 개선 건의 - 종합·검토·자문 - 개선 건의	수시					7. 국제협력	○국제협력체제 유지 및 협력 증대 - 일본,유럽,미국,호주등 ○해외자료조사 및 시찰단 파견 - 대상지역: 일본,미국 또는 호주 - 기간: 7일 - 대상인원: 10명 내외 - 비용: 참가자 부담	계속				
		수시							1회				
2. 열병합발전 기술교육·세미나 실시 및 관련세미나 등 교류	○기술 교육(2일) - 실무 요원 ○기술 세미나(2일) - 운전·보수 및 환경대책 기술 * 주제 등 세부사항은 수요 조사후 확정 ○관련세미나, 발표회 등 참가 및 안내	2회					8. 협회수입 증대 강구	○협회지 광고 추진 ○업체순방 및 회비책정방법 수준 등 검토 - 다단계화 등 ○수탁·수익사업 연구·개발	계속				
		1회							"				
3. 회원사간 유대강화	○회원사 주요현황 파악 - 연혁, 주요시설, 인력, 재무사항 등 ○회원사 상호 방문·교류 - 특수기술·시설 소재 및 견학 등 ○지역 및 부문별 간담회 실시	수시					9. 홍보 및 회원사 지원 협조	○정기간행물(협회지) 발간 - 발간횟수, 부수, 면수 증가 ○일반 간행물 발간 - 전국 열병합발전시설·운영실태 - 열병합발전 보수관련 업체 정보 - 관련 법령집 - 회원사 현황 - 협회 브르셔 - 협회 소장자료 목록 - 기타 자료 ○홍보자료 배포 및 보도 - 행사 등 주요사항	수시				
		1회							6회				
		수시							수시				
4. 회원사확대 추진	○관련업체 파악 - 정회원, 특별회원 ○가입독려(지역별,업종별) - 공문, 전화,방문 안내 - 교육·세미나등 초청	수시					10.전문·자문 위원 운용	○분야별 전문위원 운용 ○자문위원 운용	수시				
		수시							수시				
5. 기술·정보 보급 및 교류	○국내외 관련 기술정보 수집 보급 ○정보자료의 문헌정보화 ○관리자 간담회 실시 ○실무자 간담회 실시 * 상호기술·정보 소개 등	계속					11. 행정관리·기타	○정기총회·이사회 ○임원회의 활성화 ○정관·규정 개정 등	수시				
		"							수시				
6. 조사 연구	○전국 열병합발전시설 및 운영실태조사 ○열병합발전 정비·보수·시공업체정보 조사 ○기타 현안관련 조사연구	수시					합 계	11개 분야 31개 사업	수시				
		1회					1회						
		1회					4회						
		수시						1회					

참고자료 2.

정기 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46조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가. 기력·내연력·가스터빈 발전소 및 수력(양수) 발전소 나. 원자력 발전소	(1)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제외한다) 및 발전기 계통 (3)수차·발전기 계통 (1)증기터빈 (2)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20개월 이내 20개월 이내	(1) 내지 (3)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있는 것을 포함한다. (1) 및 (2)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 기력·원자력·내연력 및 가스터빈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제외한다)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발전기계통을 포함한다) (2)가스터빈(발전기계통포함)·보일러·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한다) (1)병원·공연장·호텔·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예식장·지정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2)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1) 및 (2)의 설비의외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3)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kW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2년 이내 2년 마다 2월 전후 2년 마다 2월 전후 3년 마다 2월 전후 4년 이내	(1) 및 (2)의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내지 (4)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당해 발전기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를 실시한다. (1) 내지 (4)의 전기설비로서 자가용송·배전선로를 포함한다.
주)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 기간중에 실시한다.			